

기 술 정 보

기술정보지 통권 제71호 (2019년 3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조감도 >

목 차

<p>■ 건설 관련 소식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건설현장 직접 찾아 추락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 경상남도, 2019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경상남도,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p>■ 신기술 정보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형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 공법 -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Hi-R System) -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
<p>■ 국토교통 뉴스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흐름을 한눈에 -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지자체와 함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p>■ 2019년 건설기술심의 현황 24</p>
<p>■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p>■ 기술인 나눔 정보 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경상남도, '건설현장 직접 찾아 추락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일체형 작업대 활용 홍보
- 경남도, 안전보건공단(경남지역본부) 합동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공사 현장 추락사고 예방 근절 등을 위해 10월 14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원에 시공 중인 창원반계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현장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에 부응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남도와 안전보건공단(경남지역본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건설현장 주변에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 홍보를 실시했으며,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및 일체형 작업대 활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실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상욱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건설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해 현장교육 등 다양한 홍보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4)

경상남도, 2019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교육 실시

- 21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 3층 대강당
- 경남도·안전보건공단 협업해 안전관리교육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 및 18개 시군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건설기술인(감리자·시공자) 약 23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교육’을 10월 21일 창원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남도가 올해 처음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재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협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2022년까지 건설업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4월에도 도 및 시군 공사 감독 공무원,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교육은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계약서 상 안전관리와 작업별 주요 요인, 재해사례 전파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위주로 실시됐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현장관계자의 역량을 높여 향후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철저한 현장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4)

경상남도,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14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대강당...안전 관리 담당공무원 및 건설기술인 200여 명 대상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월 14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대강당에서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과 건설기술인(감리자·시공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올해 7월 1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자료 입력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공단의 안전관리 전문강사가 직접 건설공사 안전에 대해 강의와 안전관리 교육 책자를 배포하며, ▲건설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공사 시공 및 용역평가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소개 및 사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청·시공사·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4)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흐름을 한눈에

27일부터 일산 킨텍스서 『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

- 스마트 건설시공유지관리 등 5개 테마관...취업설명회기업투자설명 등 풍성
- 김현미 장관, “스마트건설기술은 핵심 성장동력, 정부가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마중물 역할 할 것”

□ 국토교통부는 11.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주관

□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는, 240여 개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와 분야별 전문포럼(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R&D·설계VE(최적화)) 및 채용·투자유치·기술이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갖춘 종합 전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 3일간 진행되는 전시행사에서는 ①스마트 설계, ②스마트 시공, ③스마트 유지관리, ④안전한 미래건설, ⑤친환경 미래건설을 테마로,

○ ① BIM(3-D 디지털 모델링) 설계 · 드론측량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모델링·시뮬레이션, ② 건설장비 자동화·모듈러 시공, ③점검진단 로봇, ④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⑤ 태양광 건축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 건설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6개 주관기관별로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R&D(연구개발) 등 분야별 전문포럼을 개최(11.28~11.29)하여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기업투자 설명회(11.28~11.29)와 기술이전 지원행사(11.27, 건설연보유 기술 5건 무상이전)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기업(총 7개) 릴레이(연속) 취업설명회(11.29 오후)와 건설안전·시설안전 분야 21개 기업들의 현장채용 박람회(11.27~11.29)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주)삼우씨엠건축사무소

-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후 스마트 턴키제도 도입('19.4월), 스마트건설기술 연구개발(R&D) 추진('20~'25, 약 2천억 원)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18.9 개소, '19.6 2단계 개소)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으로,

- 이번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계기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 “① 핵심기술 조기 확보, ②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적용 확대, ③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건설 기술R&D에 이은 후속 R&D사업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총동원하여 적용하는 스마트 턴키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규모와 지원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O44-201-3557)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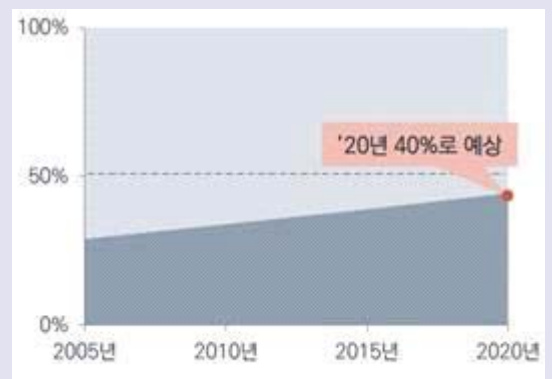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체계적 관리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건축물관리법을 통한 정책효과 사례 >

- * (사례1) 건축법 제정('62년)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 지자체장이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및 방재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등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 확대
- * (사례2) 현재에도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저가 수급으로 인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부실점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 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결과 평가 시행 및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 * (사례3)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해체·철거·리모델링 공사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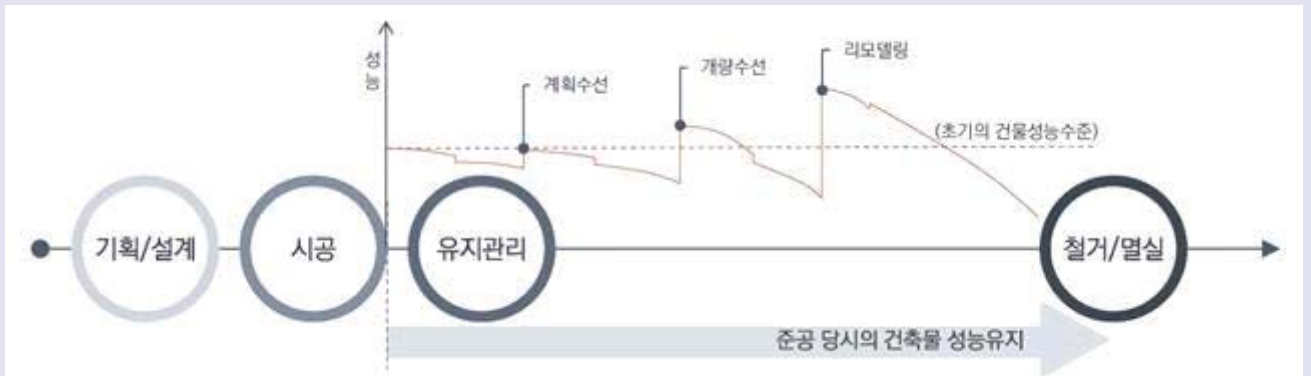
○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

* (30년 이상 건축물) ('05년) 29% → ('10년) 34% → ('18년) 37%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9.11.27.~'20.1.6.)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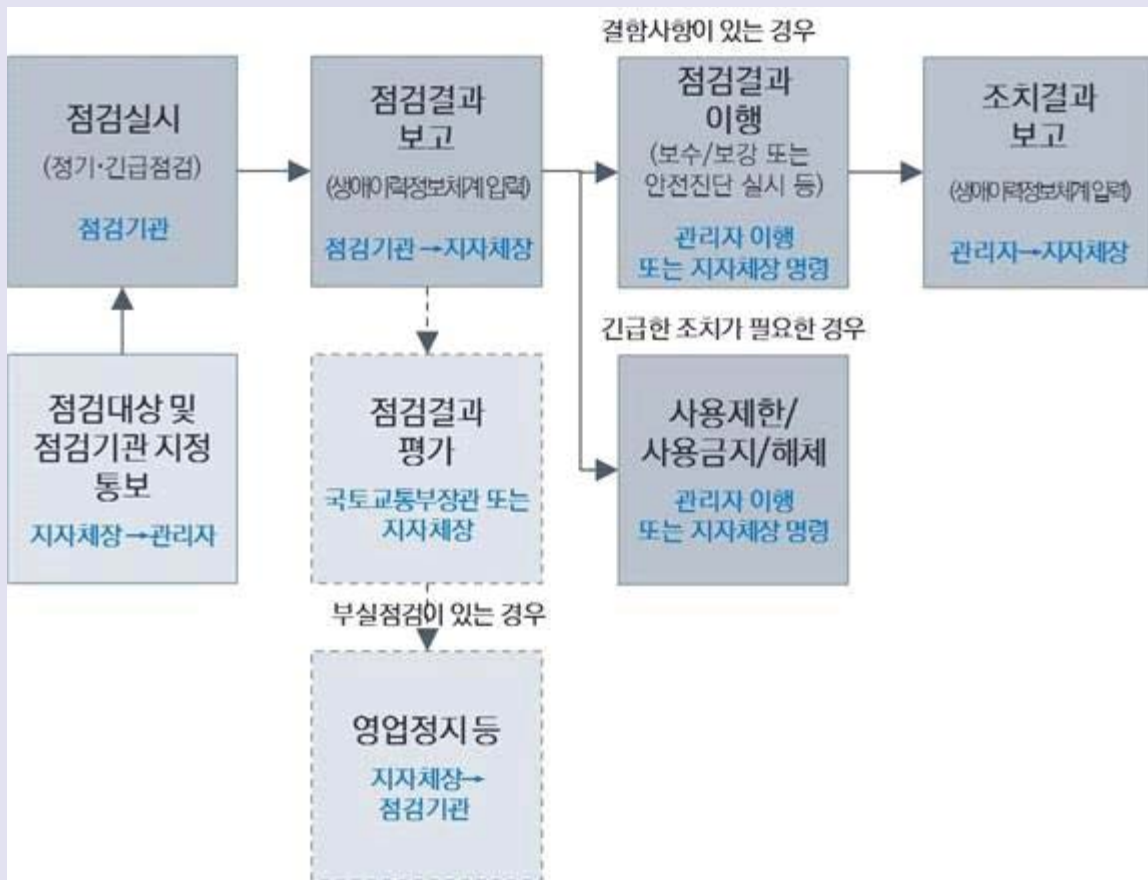
< 건축물유지관리 제도 개요 >

□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었다.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지자체장·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



<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 절차 >

②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

-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천만 원 이내, 국가: 지자체: 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하여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19.7)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한 설계·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④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O44-201-4750, 3767)
건축안전팀(O44-201-4989, 4986)

지자체와 함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일 전국 17곳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서 정책 공유, 현장이행 강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제1차 협의회('19.5.20) : 건설사고 저감방안 논의, 임금직불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공유, 위법행위 단속·처벌률 제고방안 논의 등
-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참고)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①안전, ②일자리, ③위법행위 점점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②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근로자 경력관리,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

③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 매년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등 등록기준 조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O44-201-4597)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 당초 잠정 발표한 정부안 보다 강화하기로 노사간 합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19.10.30일 17시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 국토부, 양대노총(민노 건설노조, 한노 연합노련), 소형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
 - 지난 7.25일 양중능력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규격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발표*한 이후 그간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규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강화방안'에 포함하여 발표
 - 특히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으며,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이 같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또한 이번 합의는 최근 소형 장비 사고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 '19년도 타워크레인 사고(설비장애 포함) 17건 중 소형에서 13건(러핑형 12건) 발생
- 이번 합의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하여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노사합의안) >

구분	현행	정부 잠정안 (7.25 발표)	노사 합의안 (10.30)	
			기존 장비	신규 장비
지브길이	제한없음	T형 50m 이하, L형 40m 이하	T형 50m 이하, L형 35m 이하	T형 40m 이하, L형 30m 이하
모멘트	제한없음	733kN·m 이하	686kN·m 이하	588kN·m 이하
높이	제한없음	-	건축물 15층 이하	건축물 10층 이하

* T형은 타워형, L형은 러핑형에 해당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O44-201-3538, 3542, 354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가. 건축물생애관리대장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등 규정(안 제4조, 제5조)

-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이 공개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점검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구축하도록 추가 규정

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등 규정(안 제7조)

-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단독주택, 타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등을 추가 규정

다. 정기점검 대상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을 대상으로 규정

라. 긴급점검이 필요한 상황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조례로 정하는경우 등을 규정

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등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법에서 규정된 대상 외에도 방재지구·정비해제구역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

바. 안전진단 대상 등 규정(안 제17조, 제18조)

-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

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1, 별표2, 별표3)

- 관리점검기관 및 점검책임자의 요건, 지자체장의 점검기관 명부 작성·관리 의무, 법에서 지정된 기관 외 추가 지정된 기관 등을 규정

아.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상 등 규정(안 제26조)

-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표본조사, 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결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

자.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등 규정(안 제28조)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난연재료 기준 미만 재료 사용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1층을 필로티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로 규정

차.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대상 등 규정(안 제30조)

- 법에서 규정된 대상 외에도 건축신고 대상 및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3m 미만 건축물 등을 해체신고대상으로 추가 규정

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등 규정(안 제32조)

- 3층 이상 건축물 등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감리자 명부 관리 등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타. 건축물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규정(안 제39조)

- 건축물관리사업자 지원 대상을 건축사사무소·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 등으로 규정하고, 우수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파.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 등 규정(안 제40조)

- 법에서 규정된 기관 외에도 일정 요건(예산·시설·전문인력 등 확보)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 가능 기관으로 추가 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안 제3조, 제4조)

- 건축물대장 정보,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규정(안 제7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지정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방법 등(안 제23조)

-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sybaek2334@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0,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이 실제 설계업무에 참여하여 경력·실적을 쌓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중복도 평가 (부표1)

업무중복도 평가업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업무중복도 검증을 하도록 개선

나.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별표1)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활용실적 평가 (별표1)

신기술 적용이 공사단계에서 설계단계로 개선('19.4.~)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조정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부표1)

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 방식의 용역수행 시 실적인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실적 건수를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마. 실무기술인 교체 근거신설 (부표1)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평가이후 용역 계약 이전에 퇴사 등 당해 용역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 044-201-5551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5551)

ㄱ형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향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 공법

□ 고시번호

- 제2019-371호(2019-07-12)

□ 신기술 개발자

- 주식회사 포스코, (주)포스코건설, 주식회사 한라, (주)한양, (주)호반건설, (주) 피컴스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68
- 기술분류 : 건설 교통 > 건설시공재료 > 건축시공기술

□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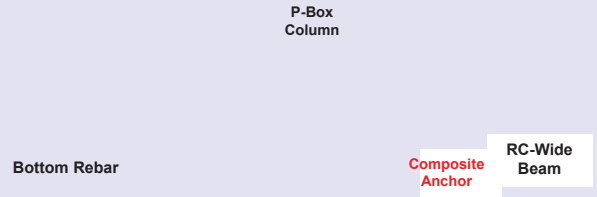
- 단면이 장방향인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보 길이 방향으로 ㄱ형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결합한 장방향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공법

□ 내용

- 이 신기술은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은 보 길이 방향으로 폭이 좁은 장방향으로 제작하며, 철근콘크리트 보는 깊이보다 폭이 큰 와이드보를 채택하여 철근콘크리트 보가 충전합성기둥 외부로 둘러싸도록 구성하고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충전합성기둥에 접합시키기 위해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ㄱ형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충전합성기둥 외측으로 정착 길이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와 결합시키는 접합공법이다

□ 보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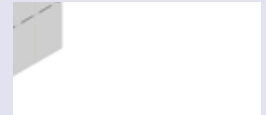
- 2019-07-12 ~ 2027-07-11



P-Box 기둥과 RC와이드보 응력전달 메카니즘

P-Box 기둥 |

합성 앵커 |



P-Box 기둥과 RC와이드보 접합상세

① 공장제작	② P-BOX 기둥설치	③ 보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p>장방향 충전합성기둥 P-BOX 기둥을 공장제작한 후 ㄱ형 합성앵커 4개를 기둥 외부면에 용접하여 제작한다. 기둥 내부의 하중도입부 구간에 스티드볼트를 미리 시공한다.</p>	 <p>공장 제작된 기둥을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한다. 설치후 수직도를 확인하고 가설앵글로 교정한다.</p>	 <p>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 거푸집을 설치하고 지지용 동바리를 시공한다.</p>
④ 슬래브, 거푸집, 동바리설치	⑤ 보,슬래브 철근 배근	⑥ 콘크리트 타설
 <p>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고 필요구간에 동바리를 설치한다.</p>	 <p>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 철근 및 데크슬래브 철근을 배근한다. 이때, 보 주근은 기둥 옆으로 패싱한다.</p>	 <p>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기둥 절별 최상부층은 P-BOX기둥 내부 콘크리트 타설후 바닥슬래브를 타설한다.</p>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

□ 고시번호

- 제2019-487호(2019-09-18)

□ 신기술 개발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양우건설 (주), (주)한보엔지니어링,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72
- 기술분류 : 건설 교통 > 건설시공 재료 > 건축시공기술

□ 범위

-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난연성 방수시트의 모서리 접합부에만 함침용 우레탄을 적용하고, 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 내용

-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를 일체화한 난연성능의 방수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부착력이 향상된 P&U프라이머를 개발·적용하여 별도의 중간 매개체 없이 시트와 도막을 일체화함으로써 접합부의 수밀안정성 및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고, 상부 우레탄도막을 시트 상부 전면에 도포하지 않고, 조인트 부위와 끝단부, 모서리부위 등 취약부위에만 시공함에

따라 시공성 및 경제성이 향상되며, 시트상부에 난연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함으로써 옥상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방수공법

□ 보호기간

- 2019-09-18 ~ 2027-09-17



① 바탕정리



② 시트시공



③ 접합부 시공
(보강섬유 및 우레탄 시공)



④ 난연성 탑코트 시공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13)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

□ 고시번호

- 제2019-520호(2019-09-30)

□ 신기술 개발자

- 주식회사 큐빅스,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건화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73
- 기술분류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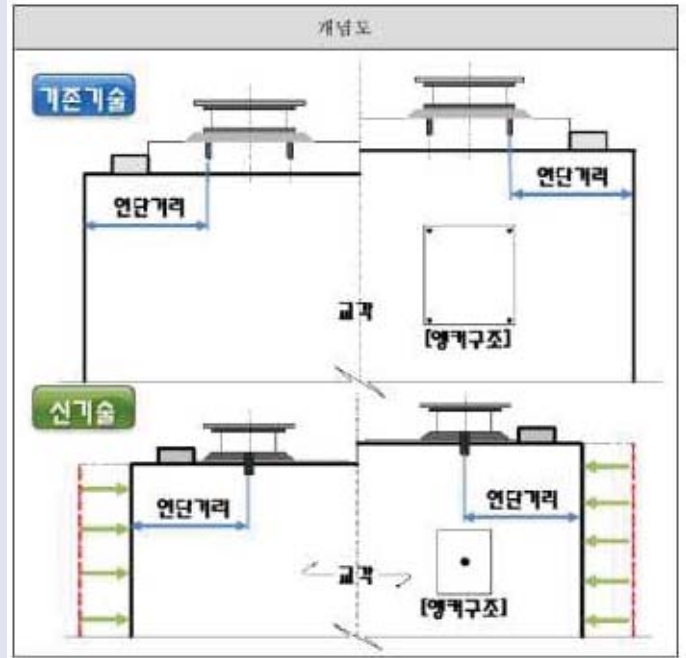
-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고강도 단일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를 소형화하여 협소공간에 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교량받침 기술

□ 내용

- 고강도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한 교량받침을 적용하여 필요 연단거리를 만족하고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임으로써,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교대 및 교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

□ 보호기간

- 2019-09-30 ~ 2027-09-29



① 신기술 만원제기	② 블록아웃 및 지원	③ 레베틀 볼트 설치
수직하중과 탄성계수의 등성제하중과 현장특성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 후 현장 날름	콘크리트 프레임틀 이용하여 울타리틀 블록아웃하고 바닥면을 치밀	교량받침 수평막임을 위해 레베틀 볼트를 절단과 용접하여 설치
④ 교량받침 설치	⑤ 부수축 울타리 타설	⑥ 부수축 울타리 완성
보강철근을 주철근과 용접하여 설치 후 앵커케이스를 견고히 밀착, 용접하며 교대받침 설치	커브집 설치 이후 신구콘크리트 침착체를 도모하고 부수축 울타리를 타설	현장상황과 계획에 따라 콘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시켜 주며 울타리 완성

<신기술의 개념도 및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2019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1)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1회 '19.1.31	실시설계 (타당성)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사천시 사천읍 일원 · 공사내용 : 산업단지(A=149,424㎡) · 공사비 : 289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2년	사천시 (산단관리과)	조건부 채택
제2회 '19.2.28	실시설계 (타당성)	울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 위 치 : 합천군 울곡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등 · 공사비 : 291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1년	합천군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항만분야)	· 경상남도 항만분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조건부 채택
제3회 '19.3.25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창원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 위 치 : 창원시 일원 · 용역내용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용역비 : 9.6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0년	창원시 (건설도로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 위 치 : 창원시 일원 · 용역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용역비 : 6.9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0년	창원시 (재개발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채택
제4회 '19.4.25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경상남도 일원 · 용역내용 :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 용역비 : 5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0년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양산시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 위 치 : 양산시 일원 · 용역내용 : 블록구축 및 유수율제고 · 용역비 : 21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2년	양산시 (수도과)	조건부 채택
	건설기술용역 업자 선정방법 및 입찰공고(안) 적정성	미FDA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남해군 일원 · 용역내용 : 하수처리시설 8개소 등 · 용역비 : 47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2년	남해군 (상하수도 사업소)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1

2019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2)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5회 '19.4.26	실시설계 타당성	통영시 화장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통영시 정량동 일원 · 공사내용 : 화장장 및 부대시설 · 공 사 비 : 145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1년	통영시 (노인장애안복지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정비 L=5.3km · 공 사 비 : 267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1년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평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창녕군 대합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정비 L=5.3km · 공 사 비 : 223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2년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당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정비 L=3.6km · 공 사 비 : 277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2년		조건부 채택
제6회 '19.5.30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창원시 도로지반 침하탐사용역	· 위 치 : 창원시 일원 · 용역내용 : 창원시 도로지반침하 탐사 · 용 역 비 : 9.5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0년		창원시 (도로건설과)
제7회 '19.6.26	실시설계 타당성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진주시 일원 · 공사내용 : 노후하수관로 정비 · 사 업 비 : 310억원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진주시 (하수시설과)	조건부 채택
	입찰방법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대체시설) 공사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 공사내용 : 소각시설 200톤/일 · 공 사 비 : 399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창원시 (환경위생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가중치기준)
	입찰방법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 위 치 : 김해시 부곡로 35 · 공사내용 : 자원순환시설 300톤/일 · 공 사 비 : 790억원 · 공사기간 : 2021년~2024년	김해시 (청소행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가중치기준)
	입찰방법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 위 치 : 김해시 구산동 · 공사내용 : 종합운동장건립 · 공 사 비 : 1,418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김해시 (체육지원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적합최저가)
제8회 '19.7.24	실시설계 타당성	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하동군 고전면 일원 · 공사내용 : 배수펌프장 및 하천정비 · 사 업 비 : 157억원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하동군 (안전총괄과)	조건부 채택
	기술평가방법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김해시 구산동 일원 · 용역내용 : 김해종합운동장 건설사업관리 · 용 역 비 : 72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3년	김해시 (체육지원과)	PQ+TP
	실시설계 타당성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진주시 초전동 일원 · 공사내용 : 도로확포장 L=1.65km · 사 업 비 : 129억원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진주시 (건설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1

2019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3)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9회 '19.8.29	입찰안내서 적정성심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 위 치 : 김해시 구산동 · 공사내용 : 종합운동장건립 · 공사비 : 1,418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김해시 (체육지원과)	조건부 채택
제10회 '19.9.26	기술평가방법 적정성	의창구청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용역내용 : 의창구청 신축공사 · 용역비 : 29억원 · 용역기간 : 2020년~2022년	창원시 (회계과)	원안채택 (PQ+SOQ)
	기술평가방법, 기술인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적정성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8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 위 치 : 고성군 일원 · 용역내용 : 하수처리시설 16개소 등 · 용역비 : 49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3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조건부 채택 (PQ+SOQ)
	실시설계 타당성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 위 치 : 함안군 칠원읍 · 공사내용 : 하수관로 정비1식 · 사업비 : 350억원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창원시 (수도시설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가야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함안군 가야읍, 산인면, 함안면 · 공사내용 : 하수관로 정비1식 · 사업비 : 402억원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조건부 채택
제11회 '19.10.31	설계공모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김해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 용역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등 · 용역비 : 23억원 · 용역기간 : 2020년~2021년	김해시 (청소행정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건립	· 위 치 : 진주시 충무공동 · 공사내용 : 복합혁신센터건립(지하층~지상4층) · 사업비 : 191억원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진주시 (기업유치단)	조건부 채택
제12회 '19.11.13	실시설계 타당성	양산 다방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위 치 : 양산시 다방동 일원 · 용역내용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 용역비 : 137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1년	양산시 (교통과)	조건부 채택
	입찰안내서 적정성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 위 치 : 김해시 구산동 · 공사내용 : 종합운동장건립 · 공사비 : 1,558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김해시 (체육지원과)	조건부 채택
	기술평가방법, 기술인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적정성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 위 치 : 거제시 일원 · 용역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 용역비 : 84억원 · 용역기간 : 2019년~2022년	거제시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PQ+SOQ)
	실시설계 타당성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일원 · 용역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 용역비 : 277억원 · 용역기간 : 2020년~2022년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1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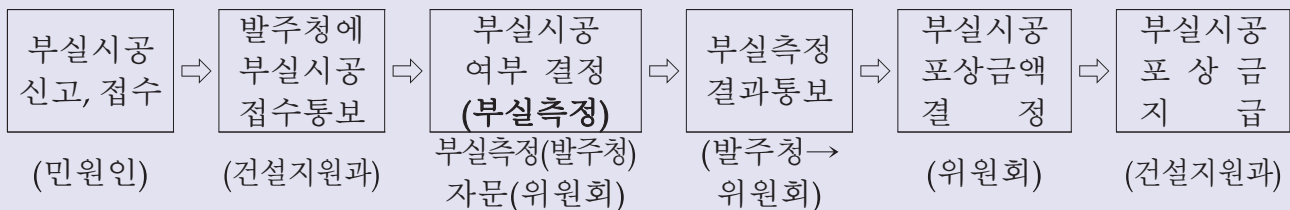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도급액 10억이상 건설공사
- ※ 대상공사 : 건설정보(www.gyeongnam.go.kr) 홈페이지에 게재

II. 부실시공 내용

- 주요 구조물의 시공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등

III. 처리절차



IV. 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1등급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2등급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3등급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 ※ 부실벌점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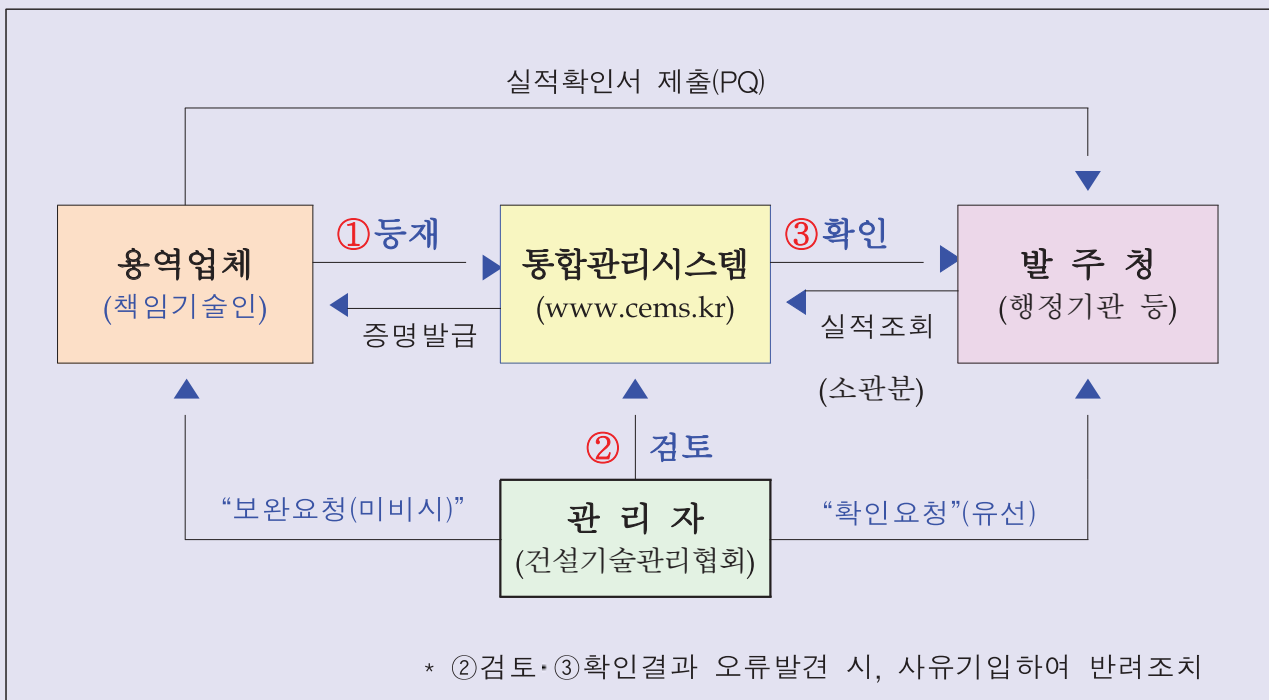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6)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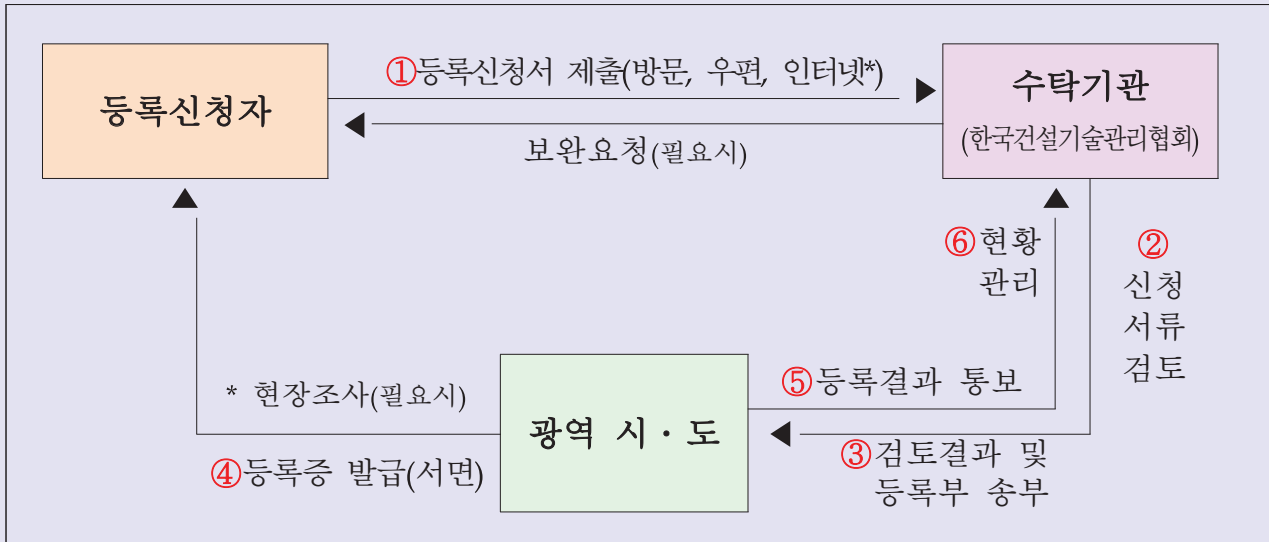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③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④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⑤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⑥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O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설정보>기술정보지)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naminan@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